

수원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나564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개명 전 성명 V)

피고, 항소인 B

변론 종결 2018. 1. 11.

판결 선고 2018. 2. 1.

제 1 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가단50778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답 4,122㎡ 중 1/18 지분 및 순천시 D 전 284㎡ 중 11/426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6. 15. 접수 제22890호로 마친 각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295,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쪽 8행의 "5,295,750"을 "4,295,750"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6쪽 15행부터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4,295,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7. 2. 9. 원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채무를 탕감받는 대가로 피고에게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단

1)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7. 2.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F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2,5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자피고, 채무자 원고, 이자 월 12.5%, 변제기 1999. 12. 말일까지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원고의 남편 T는 2000. 2. 12. 피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에 관하여 채무자T, 이자 월 10%, 변제기 2002. 2. 9.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제1심 변론 과정에서 일관되게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고, 피고의 남편 U도 제1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한편 제1심 증인 I는 "피고가, 원고가 모친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갖다 쓴 것이 있기 때문에 원고 소유지분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제1심 증인 T는 이 사건 토지와 무관하게 차용금 2,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단지 정산하기 위하여 피고를 찾아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는 제1심에서 위 대여금과 관련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와 사이에 위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서(을제1호증)를 작성하였던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 당시 잔존 대여금액 및 원고 소유 지분의 가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 당시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만 일부 지급받아 원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고, 원고 소유 지분의 추정 시가가 약 1,000만 원인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잔존 대여금액과 원고 소유 지분 가액의 차액이 상당히 크다), 원고는 차용금채무의 성립 및 잔존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피고가 제출한 차용증은 두 장 모두 찢어진 상태로 위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앞선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금전지급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유 없는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송승용, 판사 최유경, 판사 민경현

1) 제1심판결 기재 청구취지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